

● 제303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공영장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865)

2021. 12.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한기영 의원 발의]**

의안번호 2865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경위**

- 가. 제안자 : 한기영 의원 발의(찬성 12명)
- 나. 제출일자 : 2021년 10월 15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 **2. 제안이유**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시 종교 등을 고려한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시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3항).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시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한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제안되었음.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본 조례안은 시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안 제8조 3항).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내용) ①·② (생략)  <신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u>  ④ ----- 제3항----- -----.

## 나. 공영장례 사업 추진 현황

- 서울시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시민 등 장례능력이 없는 취약 계층에게 장례의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공영장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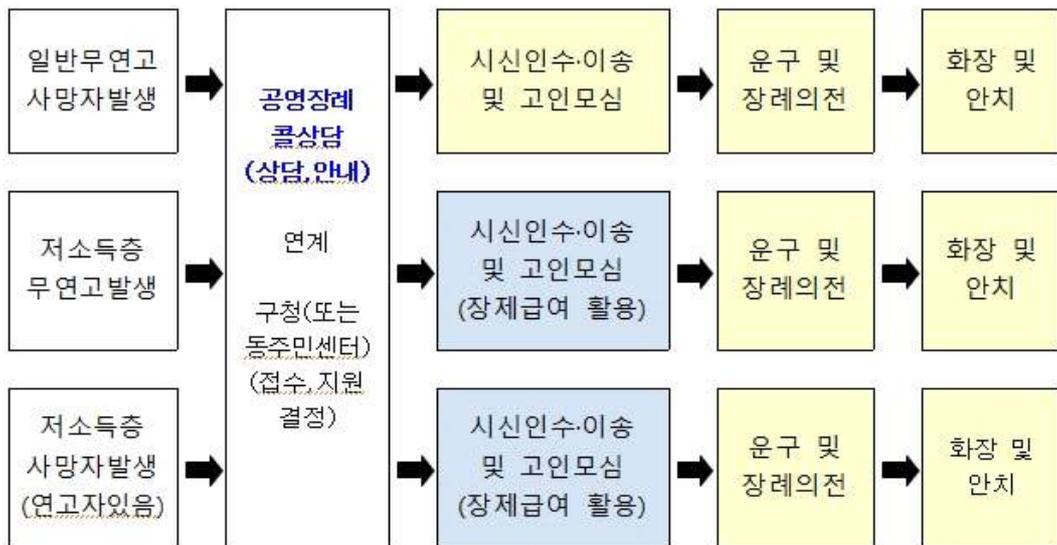
### 2021년 서울시 공영장례 사업 주요내용

#### ○ 지원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및 서울시 공영장례조례 제6조1)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고자가 실질적으로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미성년자, 장애인, 75세이상 어르신 등)
-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주관으로 장례를 지내는 경우

#### ○ 지원내용 : 장례식장 빈소 마련 및 장례의식 지원 등

- 유형별 장례지원 절차



1)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6조(지원대상자) 시장은 사망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망자
3.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의 취지는 고인이 생전에 종교가 있었을 경우, 공영장례 시 해당 종교의식을 갖춘 장례지원을 통해 추모의식을 더욱 존엄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다만,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공영장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고인의 생전 종교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종교를 고려한 장례의식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018년~2021년 공영장례 지원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11월말)
계		389	434	667	613
무연고	무연고 사망자	382	318	268	192
	저소득시민(무연고)	미실시	99	397	417
저소득시민(연고자 있음)		7	17	2	4

#### 라.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 원안동의

- 생전 고인의 종교를 고려하여 장례의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그 필요성을 공감하며, 고인의 생전 종교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종교를 반영한 장례의식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본 조례 개정안은 공영장례 지원 시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되었음.
- 고인이 생전에 종교가 있었을 경우, 공영장례 지원 시 해당 종교의식을 갖춘 장례지원을 통해 추모의식을 더욱 존엄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류민국 입법조사관 (02-2180-8140)